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29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13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4일, 봉양순 의원 대표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봉양순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한강 교량에 위치한 전망호텔 운영을 위하여 한강공원 휴양시설 이용료에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.
- 또한,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이용료를 현실화하고,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별표 2 제3호 휴양시설 이용료에 숙박시설(전망호텔)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
- 2) 별표 2 제6호 중 자전거대여소 기준 및 이용료 부분을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운영 대기 중인 한강교량 전망호텔(이하 “전망호텔”이라 함) 이용료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,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현실화 및 보유 자전거의 다양성을 위하여 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세부 검토 의견

1) 전망호텔 이용료 관련

-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‘관광숙박 시설’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고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¹⁾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바 있음.
- 이후 전망호텔²⁾의 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탁자로 선정³⁾되었고 온라인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(airbnb)를 통해 예약을 진행할 계획임.
-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에 앞서 이용료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, 1박 기준 345,000~500,000원으로 하고 세계 불꽃축제 등 극성수기에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1) 「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」 참고

2) 최대 4명까지 입실이 가능한 144.13㎡ 규모(약 44평)의 1실로 조성 완료된 해당 시설의 공식 명칭은 ‘스카이 스위트, 한강브릿지, 서울(Sky Suite, Hangang Bridge, Seoul)’임.

3) 라마다호텔 등 다수의 호텔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(주)산하HM으로 선정됨.

조례안에서 제시한 이용료 범위는 한강 전망이 가능한 주변 호텔의 숙박 요금과 감정평가 결과⁴⁾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, 세계 불꽃축제 등 특별 이벤트나 크리스마스 등 극성수기에는 이용료를 별도로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되팔기 행위를 막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.

한편, 동 사업이 이전에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인 만큼 미래한강 본부의 철저한 관리·감독과 더불어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.

2) 자전거대여소 기준 및 이용료 관련

- 본 조례안은 별표 2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를 조정(인상)하고,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 범위를 신설하는 것임.
- 현재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⁵⁾는 사용허가 방식⁶⁾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, 조례에 자전거 종류별(1시간 기준 및 추가요금) 이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이용료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현행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가 2010년에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던바, 그간의 물가상승률⁷⁾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.

4) 요금 범위 산정 방식(대상 물건의 연간 임대료를 산정한 후, 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숙박료 산정)에 따른 결과(감동감정평가[34만원~50만원], 선한감정평가[35만원~50만원])의 평균치

5) 자전거대여소는 강남 9개소, 강북 4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고, (주)타고가 사용허가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(사용료 : 5억 3천만원(부가세 별도), 운영 기간 : 2023.09.01.~2025.08.31.(2년))

6) 별첨 (1) 참고

7) 202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, 소비자물가지수(총지수) 2010년 86.373, 2023년 111.59
-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<https://ecos.bok.or.kr/>) 참고

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을 보면, 1인승과 2인승 자전거(1시간 기준) 이용료는 각각 3,000원과 6,000원으로 현행 조례의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추가 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함에 따라 자동으로 이용료 인상 효과가 있는바, 현행 이용료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〈자전거 종류별 이용료 범위 및 이용료〉

구 분	이용료 범위(조례)		이용료(시행규칙)
자전거 대여소	1시간 기준		
	· 1인승	2,700~3,800원	3,000원
	· 2인승	5,400~7,600원	6,000원
	· 기타	4,000~5,000원	5,000원
	추가요금(15분당)		
	· 1인승	500~700원	500원
· 2인승	1,000~1,500원	1,000원	
· 기타	1,000~1,500원	1,000원	

- 한편, 부모와 자녀 등 여러 명이 함께 즐길 거리가 필요한 한강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,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조례에 이용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, 다른⁸⁾ 자전거대여소 이용료를 고려하여 소폭 낮은 수준으로 한강 자전거대여소 이용료를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8) 다인승 자전거 : 18,000원(세종호수) ~ 26,000원(올림픽파크)
전기동력 자전거 : 10,000원(쏘카 일레클) ~ 13,000원(세종호수공원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- 현행 조례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1인승과 2인승 자전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, 기타 이용료는 소폭 하향 조정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2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6월 13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1인승과 2인승 자전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주요 골자

-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 범위 중 1인승과 2인승 이용료 범위를 현행대로 하고, 기타 이용료는 소폭 하향 조정함(안 별표2 제6호 유희시설 자전거대여소 란)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제6호 유희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자전거대여소	1시간 기준 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 추가요금(10분당) 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	2,700~3,800원 5,400~7,600원 15,000~22,000원 8,000~11,000원 4,000~6,000원 500~700원 1,000~1,500원 2,500~3,500원 1,300~1,800원 1,000~1,500원	
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1회당(4시간 기준) · 단체독점사용	45,000~54,000원	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(제14조 관련)</p> <p>3. 휴양시설</p>	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(제14조 관련)</p> <p>3. 휴양시설</p>	<p>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(제14조 관련)</p> <p>3. 휴양시설 (개정안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colspan="3" style="width: 75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캠핑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캠핑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면당 (1박 기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,000~25,000원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top; font-size: small;">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글램핑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면당 (1박 기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,000~1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캠핑장 캠핑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~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변물놀이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이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영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이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캠핑장	캠핑장	1면당 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다.	글램핑장	1면당 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캠핑장 캠핑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강변물놀이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이상)	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			수영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이상)	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colspan="3" style="width: 75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캠핑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캠핑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면당 (1박 기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,000~25,000원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top; font-size: small;">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글램핑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면당 (1박 기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,000~1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캠핑장 캠핑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~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변물놀이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 이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영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 이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박시설 (전망호텔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박 (4인 이하 기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5,000~50,000원</td> <td>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font-size: small;">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 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캠핑장	캠핑장	1면당 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다.	글램핑장	1면당 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캠핑장 캠핑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강변물놀이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 이상)	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			수영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 이상)	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			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	35,000~50,000원	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 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<p>6. 유희시설</p>
구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캠핑장	캠핑장	1면당 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글램핑장	1면당 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캠핑장 캠핑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변물놀이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이상)	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영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이상)	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캠핑장	캠핑장	1면당 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글램핑장	1면당 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캠핑장 캠핑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변물놀이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 이상)	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영장	어린이(6 ~ 12세) 청소년(13 ~ 18세) 성 인(19세 이상)	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 (4인 이하 기준)	35,000~50,000원	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 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자전거 대여소	1시간 기준 · 1인승 · 2인승 · 기타 추가요금 (15분당)	2,700~3,800원 5,400~7,600원 4,000~5,000원	
	· 1인승 · 2인승 · 기타	500~700원 1,000~1,500원 1,000~1,500원	
레이싱 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 림장	1회당 (4시간 기준) ·단체독점사용	45,000~54,000원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자전거 대여소	1시간 기준 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 추가요금 (10분당)	3,500~5,000원 7,000~10,000원 15,000~22,000원 8,000~11,000원 6,000~7,500원	
	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	500~700원 1,000~1,500원 2,500~3,500원 1,300~1,800원 1,000~1,500원	
레이싱 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 림장	1회당 (4시간 기준) ·단체독점사용	45,000~54,000원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자전거 대여소	1시간 기준 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 추가요금 (10분당)	2,700~3,800원 5,400~7,600원 15,000~22,000원 8,000~11,000원 4,000~6,000원	
	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	500~700원 1,000~1,500원 2,500~3,500원 1,300~1,800원 1,000~1,500원	
레이싱 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 림장	1회당 (4시간 기준) ·단체독점사용	45,000~54,000원	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3호 휴양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 제6호 유희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
캠핑장	캠핑장	1면당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.
	글램핑장	1면당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
	캠프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
강변 물놀이장	어린이(6~12세) 청소년(13~18세) 성 인(19세 이상)		1,000~1,500원 1,500~3,000원 3,000~3,200원	
수영장	어린이(6~12세) 청소년(13~18세) 성 인(19세 이상)		2,700~3,800원 3,600~5,100원 4,500~6,400원	
숙박시설 (전망호텔)	1박(4인 이하 기준)		345,000~500,000원	극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6. 유희시설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자전거대여소	1시간 기준 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 추가요금(10분당) · 1인승 · 2인승 · 다인승 · 전기동력 · 기타	2,700~3,800원 5,400~7,600원 15,000~22,000원 8,000~11,000원 4,000~6,000원 500~700원 1,000~1,500원 2,500~3,500원 1,300~1,800원 1,000~1,500원	
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1회당(4시간 기준) · 단체독점사용	45,000~54,000원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				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			
3. 휴양시설				3. 휴양시설			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
캠핑장	캠핑장	1면당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	캠핑장	캠핑장	1면당(1박 기준)	13,000~25,000원
	글램핑장	1면당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		글램핑장	1면당(1박 기준)	80,000~120,000원
	캠프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		캠프시설	개소당(바비큐, 캠프파이어 등)	5,000~20,000원
강변 물놀이장	어린이(6~12세)		1,000~1,500원	강변 물놀이장	어린이(6~12세)		1,000~1,500원
	청소년(13~18세)		1,500~3,000원		청소년(13~18세)		1,500~3,000원
	성 인(19세 이상)		3,000~3,200원		성 인(19세 이상)		3,000~3,200원
수영장	어린이(6~12세)		2,700~3,800원	수영장	어린이(6~12세)		2,700~3,800원
	청소년(13~18세)		3,600~5,100원		청소년(13~18세)		3,600~5,100원
	성 인(19세 이상)		4,500~6,400원		성 인(19세 이상)		4,500~6,400원
숙박시설 (적막·호택)	1박(4인 이하 기준)		345,000~500,000원	숙박시설 (적막·호택)	1박(4인 이하 기준)		345,000~500,000원
비 고				비 고			
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.				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,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.			
크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			크성수기(세계 불꽃 축제 등) 시 이용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		
6. 유희시설				6. 유희시설			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
자전거대여소	1시간 기준			자전거대여소	1시간 기준		
	· 1인승		2,700~3,800원		· 1인승		2,700~3,800원
	· 2인승		5,400~7,600원		· 2인승		5,400~7,600원
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1회당(4시간 기준)		45,000~54,000원	레이싱경기장, MTB 경기장, 익스트림장	1회당(4시간 기준)		45,000~54,000원
	· 단체독점사용				· 단체독점사용		
	· 기타		4,000~5,000원		· 기타		4,000~6,000원
추가요금(15분당)	· 1인승		500~700원	추가요금(10분당)	· 1인승		500~700원
	· 2인승		1,000~1,500원		· 2인승		1,000~1,500원
	· 기타		1,000~1,500원		· 기타		1,000~1,500원
· 다인승			2,500~3,500원	· 다인승			2,500~3,500원
	· 전기동력		8,000~11,000원		· 전기동력		1,300~1,800원
	· 기타		4,000~6,000원		· 기타		1,000~1,500원